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 등〉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5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5.
3. 회부연월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유해한 어린이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및 어린이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 지정 및 지정해제의 근거와 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확대¹⁾²⁾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부	▶ 227개 어린이제품 조사('24.8월·11월, 2회) - 32개 위해제품 발견 ▶ 273개 어린이제품 조사('25.6월·9월, 2회) - 32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특별시	▶ 200개 어린이제품 조사('24.4 ~ 12월, 15회) - 87개 위해제품 발견 ▶ 215개 어린이제품 조사('25.1 ~ 10월, 8회) - 81개 위해제품 발견
한국소비자원	▶ 55개 어린이제품 조사('24.6·9월, 2회) - 21개 위해제품 발견 ▶ 17개 어린이제품 조사('25.10월, 1회) - 9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부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특히,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

-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수('24.3월): 쿠팡(3,086만), 알리(887만), 테무(829만), 11번가(740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4.5.13.)

현행법³⁾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안전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⁴⁾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필요시 국내 반입차단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 4)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려는 것으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폐기 등의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5) [DD204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09.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
(박성민·박성훈·장철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함)
- 2025.11.0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결